

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개정이유

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위원장의 현행 임기 체제를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위원장 임기 조정 (안 제2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(단체 또는 개인)는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,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(참조 :

자치행정과장, 주소 :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, 전화 : 2116-0679, 팩스 : 2116-4609, 이메일 chlgusrbssla@nowo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